

『구미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21일

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공동구의 점용 및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공동구관리 협의회회의의 구성·운영(안 제9조)
 - 현행 9인 이내의 협의회 구성 ⇒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확대
 - 위원장 : 담당국장 ⇒ 부시장
- 공동구의 관리 위탁범위 확대(안 제10조)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4조의2제1항에

규정된 지방공사, 지방공단, 한국시설안전공단과, 도조례와 시조례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위탁범위를 확대

○ 공동구 안전점검 방법개선(안 제11조)

- 정기점검 : 연 1회 실시 ⇒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
- 정밀점검 :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조항 신설
- 긴급점검을 필요시마다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조례안은

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(공동구관리 협의회 구성인원 확대, 관리범위 대상 확대, 공동구 안전점검 방법을 개선), 기타 오탈자 수정, 띄어쓰기, 용어정리 등 법령 정비를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안건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